

『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6월 12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6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6월 21일

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 구 연

나. 제안이유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과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
(안 제4조 ~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회계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회계과 및 징수과와
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- 본 「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
조례안」은
 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에
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
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
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 및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
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